

감 사 의 건 서

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2019년 회계연도 업무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예산·회계에 관한 의견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 등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·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해야 합니다.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자료 등 재무재표, 부속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·도비 보조금 등 재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절차를 관련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2. 조직 운영에 관한 의견

- 공공기관 사회적 정책 현안의 각종 해당 법령 규정 제·개정 이행 요청에 따른 규약 및 제규정 제·개정 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0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에 의거 ‘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’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와 관련 제규정(인사위원회, 운영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) 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했습니다. 그러나 현재 장애인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▶ 장애인체육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필요 위원회를 구성하고,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보조사업

- 종목별 국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, 선수들의 경기력 점검 기회를 확대 시켰으며,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·운영 등 7년 연속 전국 우수운영 시도로 선정 되어 기금을 확보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.

4. 기타사항(개선사항)

- 1)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는 전라북도체육회관 입주 기관으로 사무공간 및 장애인 전용체육센터 외에 회의실, 선수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직원들의 업무 환경 및 다양성을 위해 사무공간 확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⇒ (관련 참고 사업)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「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」
* 생활밀착형(장애인형)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사업

- 2) 7년 연속 생활체육 전국 우수운영시도 선정으로 생활체육 사업비 확보에 따른 매해 사업량 증가 및 각종 생활체육 사업이 확대(반다비체육관 건립 공모사업,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 등) 운영되고 있습니다.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 사업량에 따른 부서원 충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⇒ (장애인체육회 부서별 인원) 기획총무과 5명, 전문체육과 3명, 생활체육과 2명

이상으로 위와 관련 업무 및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은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월 16일

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 사 최철민 (서명)

감 사 유경민 (서명)